

## 공용컴퓨터 실습실 사용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정보처 공용컴퓨터 실습실(이하 "공용컴퓨터실")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소재지) 공용컴퓨터실은 (G)공용컴퓨터실 혜화관2층 207-243호, (M)공용컴퓨터실 사회과학관2층 201-255호, (A)공용컴퓨터실 명진관2층 307-241호, (B)공용컴퓨터실 법학관2층 303-214호, (F)공용컴퓨터실 원흥관3층 405-318호, (K)공용컴퓨터실 문화관2층 102-211호, (L)공용컴퓨터실 경영관4층 202-463호, (Q)공용컴퓨터실 정보문화관Q동2층 408-221호에 소재한다. (2024.06.01. 개정)

제3조(사용범위) ① 공용컴퓨터실은 본 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에 한하여 사용되며, 비수요기에는 외부에 대여할 수도 있다.

② 시설사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1. 학부 학기 교양강좌 수업
2. 학부 학기 전공강좌 수업
3.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규강좌 수업
4. 부속교육기관 정규강좌
5. 기타 행정 교육
6. 학생들의 컴퓨터 자유 실습
7. 외부 대여 : 학생들의 컴퓨터 자유 실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함

제4조(사용기간) ① 공용컴퓨터실 사용기간은 최대 1학기를 기준으로 하고, 사용시간은 정보처 운영시간에 따른다.

② 방학기간에는 최대 해당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하고, 사용시간은 정보처 운영시간에 따른다.

제5조(사용신청 및 승인) ① 공용컴퓨터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"컴퓨터 실습실 사용 신청서"를 정보처에 제출하여 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② 학생회 및 외부 등의 단체 사용 시에는 유관 주무부서에 신청하고 주무부서장의 승인 후 주무부서에서 정보처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③ 특히 유료로 시행하는 특강 등은 소요되는 총액에 대하여 용도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'특강료 세부운영 계획서'를 첨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이지 아닐 경우 공용컴퓨터실 사용승인이 거부 될 수 있다.

④ 특정 프로그램 사용 시 정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제6조(대여조건) ① 현재의 공용컴퓨터실 PC운용의 최적화된 환경을 변경 및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없다. (2015.03.01. 개정)

② 공용컴퓨터실의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, 시설물 등이 훼손 및 파손되었을 시에는 즉시 기존 가치 이상의 재화나 현물로 배상해야 한다.

③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. (2015.03.01. 개정)

④ 공용컴퓨터실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항상 청결하게 사용한다.

제7조(사용관리비) ① 공용컴퓨터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,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정규수업, 연수교육, 학술대회 등 학내 공식행사로 인하여 공용컴퓨터실을 사용할 때에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③ 사용신청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전에 소정의 사용관리비를 재무팀에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정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2024.06.01. 개정)

## 부 칙

-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공용컴퓨터 실습실 사용료 부과기준

### 1. 건물 사용료, 냉(난)방료, 장비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수용 인원	사 용 료			냉/난방료			장비 사용료			청소비
		3시간	6시간	9시간	3시간	6시간	9시간	3시간	6시간	9시간	
공용컴퓨터 실습실 (일반강의실과 동일)	50명 이하	100,000	150,000	200,000	50,000	100,000	150,000	50,000	100,000	150,000	10,000/개 50,000/층

※ 장비사용료는 영상 음향기기/조명/빔 사용료 임  
부가가치세 별도임

### 2. PC 사용료

PC대수/실	사용료 (시간/실)	비 고
40 ~ 50대	50,000원	1. 부가가치세 별도임 2. 특별한 사항인 경우 정보처와 협의하여야 함
40대미만	25,000원	

### 3. 시행 시 참고사항

- 가. 사용료는 재무팀에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정보처 정보인프라팀에 제출함
- 나. 기타사항은 학교 사용료 기준에 준함

2015. 06. 01.

**정보처 정보인프라팀**